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2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 : 권명호 · 박대수 · 윤영석

송언석 · 김희국 · 박덕흠

최춘식 · 김형동 · 이종성

정희용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데, 이 과세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일정 기간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 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 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 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_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2월 31일----.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⑤ (생 략)

2023년 12월 31일
④·⑤ (현행과 같음)